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 5. 8.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2년 4월 16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2년 5월 3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6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2. 5. 7)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국장 김정진)

가. 제안이유

-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1.17.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자치구 조례에 위임된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 제한 등(안 제14조의2 신설)
 - 제한대상 :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중대규모점포
 -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 의무휴업일 지정 : 의무휴업일수는 월2회로 하되,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휴업일로 지정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 현 영)

- 이 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1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를 대상으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함.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서울시로부터 대형점포 등의 의무휴업일을 월 2회로 지정하고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 권고와 2012년 3월 22일 서울시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시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의무휴업일을 서울시 자치구 모두가 동일한 날짜인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월 2회)을 지정하기로 결의한 사항을 반영한 것임.
- 이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입법취지가 구현되고 지역의 상권 활성화 및 우리구 전통시장과 동네슈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며 검토결과 법체제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짐.
- 참고사항으로 영등포동 소재 타임스퀘어 내 이마트 영등포점은 쇼핑센터 유통업체로 등록되어 있어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 등의 대상이 아니므로 저촉대상이 아니며 강동구 관내 대형마트와 SSM 5곳은 영업제한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세계무역기구, 한·미자유무역협정, 한·EU자유무역협정 등에 소송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4월 9일 서울행정법원에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송파구, 경기 수원시,

성남시, 인천 부평구 등 5곳이 소송 중에 있으며 4월 26일 서울행정법원은 영업시간 제한 등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본안 소송 판결에서 결과가 뒤집히지 않는 한 계속 적용될 것으로 보임.

- 또한 지난 4월 20일 울산 중구의회, 4월 25일 광진구의회에서는 다른 자치구의 강제휴업을 지켜본 결과 재래시장에 손님이 늘지도 않으면서 소비자의 불편만 가증되었고 휴무시 입점한 점포와 인근 상권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등의 사유로 조례안을 부결한바 있음.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제 112 호 |
|----------|---------|

제출연월일 : 2012. 4.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1.17.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치구 조례에 위임된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 제한 등(안 제14조의2 신설)
 - 제한대상 :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
 -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 의무휴업일 지정 : 의무휴업일수는 월2회로 하되,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휴업일로 지정한다.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유통산업발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필요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2.3.22 ~ 4.11) 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를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영등포구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한다.
2. 의무휴업일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매월 2회로 하며, 휴업일은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휴업일로 지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3조의 제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등포구 지역실정에 적절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p> <p>< 신 설 ></p> | <p>제1조(목적) ----- ----- 「유통산업발전법」 제 8조제 3항, 제 1조의 제 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 ----- ----- -----.</p> <p>제14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영등포구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동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 제 12조의2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한다. 2. 의무휴업일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 12조의2 제3 항에 따라 매월 2 회로 하며 휴업일은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휴업일로 지정한다. |